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86
------------	-------

발의연월일 : 2018. 7. 13.

발 의 자 : 김승희 · 윤한홍 · 박덕흠

김성찬 · 문진국 · 유민봉

김종석 · 金成泰 · 전희경

최도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료기사등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학교 인정기준은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인정 여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u></p>	<p>제4조(면허) ① -----</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u></p> <p>-----</p> <p>-----</p> <p>-----</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